

창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나60977(본소), 2022나54389(반소) 판결

[공사대금 · 공사대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나60977(본소), 2022나54389(반소)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8. 20 선고 2020가소10433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박민건, 박종현

변론 종결 2022. 5. 12.

판결 선고 2022. 7.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8. 20. 선고 2020가소104337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9,0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5.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1)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320,0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B아파트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를 계약금액 67,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9. 16.부터 2019. 12.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67,9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19,096,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9,09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D동 5, 6호 라인 장애인 램프 인양 작업	4,500,000원
E동 앞 재시공 작업	2,200,000원
E동 옆 샛길 인도 확장 추가 작업	1,500,000원
우수맨홀 인양 작업	6,000,000원
보도블럭 T6cm를 T8cm로 변경한 작업	160,000원
F동 1호 라인 쪽 재시공 작업	1,000,000원
인도 폭 1.2m를 1.4m로 변경한 작업	2,000,000원
합계	17,360,000원

나.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06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우수맨홀 인양 작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를 인정한 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맨홀에 대하여 공사계약 관련 서류에 별도의 표기가 없고, 맨홀의 인상 및 이동이 필요하였으며, 경계석과 교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인상 및 이동 작업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② 피고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 여건 상 필요하여 작업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2020. 10. 19.자 항소이유서) 등에 비추어 보면, 우수맨홀 인양 작업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추가공사에 해당하고, 추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은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D동 5, 6호 라인 장애인 램프 인양 작업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진행한 후 램프, 보도블럭의 경사가 불량하여 물고임이 발생하여 공사를 한 부분으로 확인되므로, 위 부분은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나) E동 앞 재시공 작업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진행한 후 경계석이 낮게 시공되어 다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부분은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다) E동 옆 샛길 인도 확장 추가 작업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특별시방서를 기준으로 할 때 보조기층 등이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부분은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라) 보도블럭 T6cm를 T8cm로 변경한 작업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특별시방서를 기준으로 할 때 보조기층 미포설은 미시공으로 판단되어, 보조기층 포설 등의 감액 비용은 933,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위 부분은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마) F동 1호 라인 쪽 재시공 작업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택배차량 대기소 공사를 하기 위해 재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수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시공상 하자로 보행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재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부분은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인도 폭 1.2m를 1.4m로 변경한 작업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도 폭이 일부 구간에서 1.2m에서 1.4m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하나, 보조기층 미시공(40.53m²), 모래 미시공(12.16m²), 보도블럭 미시공(405.3m²)이 확인되므로, 위 부분은 추가공사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5.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도블럭 변경작업으로 감액된 공사비	933,000원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총 공사비	6,491,000원
착공내역서 공종 중 라인마킹(미시공)	2,000,000원
착공내역서 공종 중 과속방지턱(미시공)	3,000,000원

보도블럭 변경작업으로 감액된 공사비	933,000원
원가계산서에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634,695원
원가계산서에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884,250원
원가계산서에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012원
원가계산서에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환경보전비	171,870원
원가계산서에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	1,151,197원
합계	15,320,024원

나.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을 제12호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 및 그 해당 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감액하지 않고 플라스틱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하여 원고가 착공내역서 대로 과속방지턱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도블럭 변경작업으로 감액된 공사비	933,000원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총 공사비	6,491,000원
착공내역서 공종 중 과속방지턱(미시공)	3,000,000원
합계	10,424,000원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토목 준공도면 포장계획도 범례(을 제12호증)에 라인마킹 수량으로 220㎡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라인마킹이 미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착공내역서(갑 제6호증)에 국민건강보험료 634,695원, 국민연금보험료 884,2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4,012원, 환경보전비 171,870원, 안전관리비 1,151,197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제4호증의 3) 제12조 제3항은 '공사 계약금액에는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제4호증의 3) 제19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계가 2019. 12.경 제출된 이후에 피고측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위 초과 공사대금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제4호증의 3) 제19조 제1항은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9. 12.경 피고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갑 제3호증). 그런데 2019. 12. 6.자 공사완료감리보고서(을 제11호증의 4)에는 '공사 전반에 걸쳐 보조기층 골재 및 모래층의 두께가 시방서 기준에 미흡하게 시공된 점을 제외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함. 시공사에서 제출한 착공내역서 중 수량과 품목에서 실제 시공과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준공처리시 확인을 요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2), 위 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은 원고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이해되나,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준공계가 제출되고 10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4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4. 14.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윤정

판사이큰가람

-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2020. 5.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의 오기로 보인다.
- 2) 원고는 2020. 1. 28.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갑 제3호증)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31.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제2호증)을 발송하였다.